

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45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5월 27일

발 의 자 : 김광수, 권수정, 김경영,
김인호, 김제리, 김태수,
김평남, 김희걸, 노승재,
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
박순규, 서윤기, 송아량,
송정빈, 양민규, 이병도,
이성배, 이영실, 이정인,
이태성, 임종국, 장상기,
전석기, 최 선, 한기영,
홍성룡, 황규복 의원(29
명)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보증을 유지함으로써 재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 등 개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함(안 제2조제2호 및 제5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”이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, 개인을 말한다.

제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신용보증 대상) 재단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,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(이하 “소기업등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에 소재하는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2. <u>“소기업 및 소상공인”</u> 이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.	2. <u>“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”</u> 이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, <u>개인을 말한다.</u>	2. <u>“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”</u> 이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, <u>개인을 말한다.</u>	2. <u>“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”</u> 이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, <u>개인을 말한다.</u>	2. <u>“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”</u> 이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, <u>개인을 말한다.</u>
제5조(신용보증 대상) 재단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, <u>소기업 및 소상공인</u> (이하 “소기업등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(이하 생략)	제5조(신용보증 대상) 재단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, <u>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</u> (이하 “소기업등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(이하 생략)	제5조(신용보증 대상) 재단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, <u>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</u> (이하 “소기업등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(이하 생략)	제5조(신용보증 대상) 재단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, <u>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</u> (이하 “소기업등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(이하 생략)	제5조(신용보증 대상) 재단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, <u>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</u> (이하 “소기업등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(이하 생략)

문서번호

2021051800000022

비용추계서

요청인 : 기획경제위원회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정수 팀장
박주용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05.18

회신일 : 2021.05.24

내용문의 : 02-2180-7943

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목 차

- I. 비용추계 요약
-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(신용보증 대상) 개정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안 제5조(신용보증 대상)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3호의 개인을 추가함에 따라 개인(폐업자)에 대한 한시적 보증에 따른 신용보증 채원 출연

나. 전제

-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개인보증 전환을 통해 보증을 유지시켜 주는 한시적 정부추경('21.3.25) 매칭사업(정부 1 : 서울시 3)으로 2021년만 출연금 소요(단, 사업기간은 '21.7월~'22.12월임)

다. 추계기간

- 한시적 정부추경 매칭사업으로 2021년만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≒ 24,00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2021	2022	2023	2024	2025	합계
		-	-	-	-	-	-	-
세입	-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	-
세출	개인(폐업자) 보증 (안 제5조)	24,000,000	-	-	-	-	-	24,000,000
	소계(b)	24,000,000	-	-	-	-	-	24,000,000
□ 총 비용(b-a)		24,000,000	-	-	-	-	-	24,000,000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당관	조도형
사업평가팀장	이정수
예산분석관	박주용

☎ 02-2180-7943

e-mail : pjooyong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(신용보증 대상) 개정에 따라 비용 발생

2. 세부추계내역

- 개인(폐업자) 보증 = 24,000,000천원
 = 개인(폐업자) 보증 출연금×1년
 = 24,000,000천원×1년

※ 개인(폐업자) 보증 출연금 산출 내역

○ 개인(폐업자) 보증 대상 및 수요 예측			
- '20년 일시상환 대출보증 규모 및 신용보증재단 보증이용업체 평균 폐업률(10%) 고려시, 개인(폐업자) 보증공급 규모 1,608억원으로 예상			
'20년 일시상환 대출보증 잔액		'20년 말 기준 재단 이용업체 폐업률 (B)	브릿지 보증 예상 공급액 (A×B)
건수	금액(A)		
61,638건	16,080억원	10%	1,608억원
- 정부 추경시 산정한 운용배수(5배) 기준으로 출연금 편성 시, 총 필요출연금은 320억원 ※ 1,608억원/5 = 320억원			
- 서울시(3):정부(1) 매칭, 국비 80억 한도에 따라 시비(240억원) , 국비(80억원) 편성			

※ [참고]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'개인(폐업자) 보증 관련 예산 소요액 산출내역서' 참조